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07.12.24	개정	2020.03.18
개정	2008.01.30	개정	2020.10.21
개정	2008.10.27	개정	2022.08.25
개정	2011.08.16	개정	2023.03.15
개정	2012.10.04	개정	2025.02.07
개정	2014.01.21		
개정	2014.12.30		
개정	2015.05.13		
개정	2017.04.11		
개정	2018.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1.8.16.>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관련 분야 인사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5.13.>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4.11., 2020.10.21.>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08.10.27., 2011.8.16.>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시 청소년업무관련국장
4. 성남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관련국장

제4조(임기)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선임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④ 임원의 정수 내에서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

료일로 한다. <개정 2025.2.7.>

제5조(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권한 대행자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13., 2017.4.11.>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대표로서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5.13., 2017.4.1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4.11., 2018.03.01.>

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3조 제4항 제3호의 순서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03.01., 개정 2025.2.7.>

제6조(의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제3조 제4항의 순서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1.>

제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8.16.>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수의사업에 관한 사항
8.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가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재단운영과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이 사고로 인해 궐위되거나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방식은 대면 및 동시적 양방향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다. <개정 2022.8.25.>

② 의안은 제안 설명, 표결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의결하거나 수정동의 할 수 있으며 의장

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⑤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이사회에 참석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 2008.1.30., 2008.10.27.>

⑥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8.25.>

제1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2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 부의안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의안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이사회 의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개최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부의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 또는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1.>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면 이사회통지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로 처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8.25.>

제18조(이사회 사무관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이사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20.3.18., 2023.3.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19조(의안설명)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경영본부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16.. 2020.3.18., 2023.3.15.>
② 이사회의 의장은 관계 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사록) ①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의결서 및 부의원안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

제21조(이사회 참석수당) 이사회에 참석하는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30.)

이 규정은 재단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설립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의 명칭은 「조직 및 정원규정」의 명칭으로 본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21.>

이사회 부의안건

제 회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회			
연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안건구분	의결사항()	보고사항()	

제 안 자 : 직위(급) 성명

주 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1. 제안근거

2. 예산조치

3. 합의

4. 절차

5.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이사회 의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1.21., 2018.03.01.>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신 :

년도 제 회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이사회 장소 :

3. 부의안건 : 『별첨』

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별지 제3호의1 서식] <개정 2014.1.21.>

제 회 재단법인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회 상정안건

안건심의 :

보고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21.>

년 월 일

제 회 재단법인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회 의사록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별지 제4호의1호 서식] <개정 2014.1.21.>

제 회 재단법인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회 심의안건

일시 : 년 월 일(요일) : ~ : 까지

장소 :

회의출석

- 총 이사수 : 인
- 총 감사수 : 인
- 출석이사수 : 인
- 출석감사수 : 인
- 의장 : (재)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의장이 년도 제 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의거 이사장 (관계직원)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별지 제4호의2 서식]

의안 목록표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

의결내용 :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

의결내용 :

[별지 제4호의3 서식]

제 회 이사회 토의(심의) 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 의 토 의 내 용

[별지 제4호의4 서식] <개정 2014.1.21.>

제 회 이사회 서명록

년 월 일

재단법인성남시청소년재단

위의 심의(토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및 감사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 사			
감 사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1.21.>

이사회 심의결과 통보서

의안번호		제안부서	
건명			

심의결과 :

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8.03.01.>

제 차 이사회

이사회서면통지서

귀하

다음 안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의결코자 이사회 운영
규정 제 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일자	의안번호	제목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 첨부 : 제 차 이사회 부의안 부

20 년 월 일

이사장의 명에 의하여

간사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1.21., 2017.4.11.>

제 회 이사회 서면의결서

제 목 :

표제의 불임사항을 이사회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인)

직 위	성 명	의 견		서 명	비 고
		찬 성	반 대		
이사장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